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40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은해

변론 종결 2021. 1. 12.

판결 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남 고흥군 E 임야 2801㎡(이하 '원고측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F 임야 467㎡(이하 '원고 측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B이, G 전 306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원고 측 제2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 부근의 담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비용이 64,360,000원이 소요되었고 이는 원고들이 절반씩 부담하였다.

한편, 민법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여 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절반의 금액에 해당하는 32,180,000원의 이득을 얻은 것이고, 동시에 원고들은 각 16,090,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가. 민법 제237조에 정한 경계표나 담은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나.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경계표나 담의 설치의 성격상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협력을 요구함이 없이 단독으로 이를 설치한 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그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47815 판결 등 참고).

4.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담장공사를 한 것이 민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한 경계표 내지 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공사비용의 절반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원고들이 단독으로 이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설치한 담장이 토지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한 통상의 경계표나 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원고들의 소장에 따른 주장을 보면 원고들이 설치한 담장은 재난발생과 재해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시설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치한 담장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237조를 이유로 한 비용분담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